

약학대학 선거시행세칙

(2019.01.05. 개정)

1장 총강

1조 (선거의 원칙)

- 1) 선거는 전대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조 (선거 시행세칙의 목적)

약학대학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이하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약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조 (선거권)

- 1) 현재 재학 중인 본회 회원으로 한다.
- 2)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에 졸업이 되지 않는 자는 당장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 3) 약학대학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일로부터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약학대학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조 (피선거권)

약학대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은 약학대학생회칙 제11장 49조 ②항에 의거, 다음을 만족하는 자에게 있다.

- 1) 정,부학생회장 입후보는 2인 1조

(단 특별한 상황에는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피선거자격을 부여한다)

2) 학생회장 후보는 본회 회원(재학생)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며, 부학생 회장 후보는 본회 회원으로 2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는 약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피선거자격을 부여한다)

3) 본회 회원(재학생)으로부터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추천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5) 전체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자.

6조 (후보자 등록)

약학대학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룰 미팅 30분 전까지 약학대학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약선관위에 재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5조 3항에 의한 추천서

3)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명단과 재학 증명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약선관위에 재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5) 후보 사진 (포스터용 각 2장)

7조 (입후보자 심사)

1) 약학대학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2) 입후보자가 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8조 (사퇴규정)

1) 약학대학 선관위와 학생회 집행국장(원), 과대표중 입후보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 약선관위의 판단하에 기타간부에게 공직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2) 약학대학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약학대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 미팅)

약학대학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참관인으로 하며 불참시 약학대학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3장 선거

10조(선거일)

- 1)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거일은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약선관위에서 정한다.
- 4) 2항의 일정은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1조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2)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①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므로 규제하지 않는다.
 - ② 추천서는 약학대학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12조 (선거운동 기간)

-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학대학 선관위가 정한다.
- 2)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약학대학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1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 약학대학 선관위 위원, 학생회 집행국장(원), 과대표, 재적 중이 아닌 자
- 2)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4장 약학대학 선거 관리 위원회

14조 (위상)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것을 약학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15조 (목적)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조 (업무 및 권한)

- 1)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2) 약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3) 세칙과 선관위가 각 선거운동 본부(이하 선본)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

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4) 약학대학 선관위는 선거 후 자동 해체된다.

17조 (구성)

- 1) 위원장을 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을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2) 약학대학 운영위원회 전원(사퇴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과 학생회 집행부 2인으로 한다.
- 3) 약선관위 산하에 필요한 집행국을 둘 수 있다.

18조 (소집, 개최 및 의결)

- 1) 약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장의 소집 또는 약선관위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 2)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최한다.
- 3) 의결을 요하는 시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참관인

19조 (통칙)

- 1)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 2)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20조 (자격)

- 1) 참관인은 재적생으로 한다.
- 2)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조 3항을 따름) 단, 참관인을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21조 (이의제기)

-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조 (규제 조건)

- 1)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 2)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

정했을 때 선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3)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①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②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4)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6장 이의제기

23조 (이의 제기)

-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 2) 선거 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24조 (이의 제기의 처리)

-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7장 징계

25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26조 (징계의 종류)

- 1)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28, 29조에 의한다.

27조 (징계의 통보)

- 1)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선거 선전물량에 포함)
- 4) 경고의 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제가 가해진다.
 -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대자보 판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② 경고 2회 : 경고일 포함하여 2일 동안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 사퇴

28조 (임의적 징계)

1) 임의적 징계로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2)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조 (필요적 징계)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필요적 징계를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30조 (재심의)

대표 참관인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8장 투표

31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시간은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32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33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① 학생증

② 국가인정 자격증

③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4조 (투표절차)

1)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② 선거인 명부 확인

③ 투표용지 배부

④ 투표

2) 전자투표시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② 선거인 명부 확인

③ 인증번호 배부

④ 전자투표

35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2)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36조 (투표함 이송)

투표함은 투표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선관위원과 각 대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구로 이송한다.

37조 (투표마감 후 이송)

1)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 투표함 이송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기재한 선거인 명부

② 남은 투표용지

③ 제반 기표 용품

38조 (투표함 약선관위 도착 후)

1)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투표함,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각 투표소와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전후에 이상에 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39조 (투표함의 보관)

1)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선관위실에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9장 개표

40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약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41조 (통칙)

- 1) 개표는 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 2)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42조 (개표장)

- 1) 교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2)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 3)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43조 (개표소)

-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 개표는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44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인 수 공고
- ② 투표함 개봉
- ③ 개표
- ④ 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⑤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⑥ 현황판에 기재

45조 (무효투표)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어느 곳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둘 이상의 표를 한 것
- ④ 어느 곳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⑤ 선관위에서 제고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⑥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46조 (효력)

- 1)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 논의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 2)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10장 당선

47조 (당선의 기준)

- 1)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48조 (당선공고)

-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인원 1/2 이상으로 한다.)
-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11장 재투표 및 재선거

49조 (재선거)

46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50조 (결선투표)

46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위 득표자와 무효표 범위 안에 있는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51조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셋 이상의 후보가 경합하였을 경우 1위와 무효표 범위에 있는 모든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51조 (재투표, 결선투표절차)

- 1)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2)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12장 부칙

52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53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약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32대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3장 선거자금 공영제도

54조 (목적)

약학대학학생회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모든 학우에게 약학대학학생회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학생회선거의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약학대학 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55조 (운영원칙)

- 1) 선거자금공영제도는 해당년도 학생회비에서 선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각 선본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선거자금은 40만원으로 한다.
- 2) 1)항에서 지칭하는 선거자금의 사용가능범위는 각 선본이 룰미팅 때 정하는 홍보물 전체를 의미한다.
- 3) 각 선본은 선거자금 사용내역을 투표기간중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에서는 개표와 동시에 이 내역을 공고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선관위에서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4) 선거자금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룰미팅에서 정하도록 한다.
- 5) 선거자금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10만원씩을 약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 단 56조에 위배되는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이 공탁금은 약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된다.
- 6) 선거자금 공영금을 10만원 이내로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본은 잔여금을 약학대학 학생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56조 (조건)

선거자금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 집행된다.

- 1)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 2)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거운동본부
- 3)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